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 김 현 · 최민희 · 이훈기

손명수 · 이해식 · 황정아

김성환 • 윤건영 • 이학영

이정헌 · 오세희 · 박지원

윤준병 • 박희승 • 이용선

김준혁 • 이연희 • 노종면

박선원 • 전진숙 의원

(2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고 효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취지나 그 존재 의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3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받아"를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로,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 1항에 따른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5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반수의"를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	2
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	
인은 국회의 추천을 <u>받아</u> 제1	국회가 <u>추</u>
항에 따른 임명을 <u>한다</u> . 이 경	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
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u>아</u> <u>하여</u>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	야 한다
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	
인을 추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하
	지 않는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
	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u>본다.</u>
제6조(위원장)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회는 <u>위원장이</u> 그 직무를	⑤위원장 또는 제4항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u>하는 자가</u>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②
는 결원된 날부터 <u>지체 없이</u>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
<u>과반수의</u> 찬성으로 의결한다.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u>,</u>

③ ~ ⑦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